

최근의 국내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문 등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기사가 지목하는 사람을 알 수 있다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 5. 23.자 판결(2007가합1170)

사실개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부는 원고 유○○(이하 원고)가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지난 2007. 7. 10. 「KBS 안동방송 저녁 9시뉴스」, 7. 11. 「뉴스광장 1, 2부」 등을 통해 ○○지역의 홍삼원이 중국산 인삼액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건강원」의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내 보내자 “원고가 운영하는 「□□□□건강원」이 중국산 인삼액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 중 하나로 오인하게 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등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업체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도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 특정 사실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가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홍미삼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가공·판매하고 있다고 암시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도를 방영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피고가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판 결 문

사 건 : 2007가합1170 손해배상(기)

원 고 : 유 ○ ○

피 고 : 한국방송공사

변 론 종 결 : 2008. 4. 25.

판 결 선 고 : 2008. 5. 23.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2.부터 2008.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2007.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증인 이○○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방송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주봉화출장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 ○○읍 ○○리 ○○상가에서 「○○○○건강원」이라는 상호로 인삼제품 즉석판매가 공제조합(이하, '이 사건 홍삼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KBS 안동방송 저녁 7시 뉴스', 'KBS 안동방송 저녁 9시뉴스' 및 '뉴스광장 1, 2부'라는 프로그램을 각 제작·방영하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보도의 취재과정

(1) 피고는 2007. 7. 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배포한 ○○지역의 중국산 홍미삼 부정유통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접하자 이를 취재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리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소속의 취재기자는 2007. 7.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이루어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시 ○○읍 소재 홍삼가공업체의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하였다.

(2) 그 과정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단속 직원은 이 사건 홍삼원을 방문하여 위 홍삼원에서 가공, 판매 중인 홍삼액의 원료인 홍미삼의 원산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홍삼원에서는 위반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3) 한편 피고 소속의 취재기자는 위 동행 취재 과정에서 실제 부정유통을 한 위반업체를 취재하고자 하였으나 위 업체가 문을 열지 않아 취재하지 못하였고, 대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 사건 홍삼원에 대한 위 현장 점검 과정을 촬영하였다.

(4) 취재 후 피고는 중국산 홍미삼의 부정유통문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뉴스를 정리·편집하면서 실제 부정유통을 한 위반업체 대신 이 사건 홍삼원의 현장 점검 과정을 촬영하였던 장면을 배경 화면으로 일부 구성하여 아래 다.항의 내용으로 각 보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도내용

(1) 2007. 7. 10.자 'KBS 안동방송 저녁 7시뉴스'의 보도내용

피고는 2005. 7. 10. 19:20경 자신의 'KBS 안동방송 저녁 7시뉴스' 시간에 이 사건 홍삼원의 현장 점검 촬영장면을 배경으로 하여 별지 1 기재 내용으로 25초가량 보도하였다.

(2) 2007. 7. 10.자 'KBS 안동방송 저녁 9시뉴스', 2007. 7. 11.자 '뉴스광장 1부 및 2부'의 각 보도내용

(가) 피고는 2005. 7. 10. 19:38경 자신의 'KBS 안동방송 저녁 9시뉴스' 시간과 2005. 7. 11. 06:40경 '뉴스광장 1부' 시간, 같은 날 07:17경 '뉴스광장 2부' 시간 등 총 3회 동안 별지 2 기재 내용으로 1분 13초가량 보도하였다.

(나) 위 각 보도의 도입부 무렵 별지 2 기재 앵커 멘트가 나오면서 화면 우측 상단에 '중국산 국산 둔갑'이라는 자막(KBS 안동방송 저녁 9시뉴스) 또는 화면 하단에 '중국산 홍삼액 국산으로 둔갑시켜'라는 자막(뉴스광장 1부 및 2부)이 나왔다.

(다) 별지 2 기재 취재기자 멘트 1이 연속되면서 초반에는 영주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 및 내부가 배경화면으로 나오다가 위 취재기자 멘트 1 중 '적발된 업체는 중국산 홍미삼으로 만든 홍삼액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했습니다' 부분부터 이 사건 홍삼원 내부 장면(위 화면의 하단에 '중국산 홍미삼으로 만든 홍삼액 국산 둔갑'이라는 자막이 기재) 및 이 사건 홍삼원에서 가공, 판매하고 있는 홍삼액의 상품포장용 박스를 클로즈업하여 촬영한 장면(상품포장용 박스 외관에 기재된 문구가 어느 정도 불투명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박스 중앙에 크게 새겨진 '蔘'이라는 문자 및 도안 자체는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이 각 배경화면으로 나왔다.

(라) 이후 별지 2 기재 취재기자 멘트 1의 후반부인 '영주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처럼 중국산 인삼의 국산 둔갑 판매가...'부분에서 이 사건 홍삼원의 출입구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단속 직원 등이 들어가는 장면을 방영하였는데, 출입구 주변의 도로에 놓여진 물건, 주변 상점의 구조물 등이 함께 나왔다. 다만, 위 출입구 유리에 부착된 상호와 전화번호 자체는 불투명 처리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직원에 가리는 등으로 인해 화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다.

(마)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출장소 김○○ 소장의 인터뷰 내용이 이어진 다음 별지 2 기재 취재기자 멘트 2인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홍삼원의 내부장면이 불투명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영되었다.

2.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홍삼원이 위 기초사실 중 다.항 기재와 같이 배경화면으로 방영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중국산 홍미삼을 국산으로 속여 홍삼액을 가공하여 부정유통, 판매하는 업체 중 하나라고 오인하게 하여 이 사건 홍삼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 당시 이 사건 홍삼원의 상호 등을 직접 방영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보도의 배경화면으로 방영된 부분(이 사건 홍삼원의 출입구, 원고가

사용 중인 상품포장용 박스)도 화면 전체를 불투명하게 처리(핀-아웃, 일종의 모자이크 효과) 하였으며, 불투명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이 사건 홍삼원의 내부장면은 다른 홍삼원의 내부와 구별되는 특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는 등, 위 각 보도에 나타난 부분만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이 이 사건 홍삼원임을 식별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이 사건 홍삼원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가사 일반 시청자들이 이 사건 홍삼원임을 식별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도 직후인 2007. 7. 11. 'KBS 안동지역 저녁 9시뉴스'에서 이 사건 홍삼원이 중국산 홍미삼을 국산으로 허위 판매한 업체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추후보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보도에서 이 사건 홍삼원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업체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홍삼원의 경우에도 그 특정을 위해서 반드시 상호나 전화번호 등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이 사건 홍삼원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써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이 사건 홍삼원의 상호나 전화번호,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홍삼액 상품포장용 박스 등이 직접 방영된 것은 아니고, 배경 화면으로 보도되면서 어느 정도 불투명 처리된 점은 인정되나, ① 이 사건 홍삼원의 출입구를 보도하면서 주변의 지형, 지물이 일부 노출된 점, ② 이 사건 홍삼원 내부의 장면은 불투명 처리되지도 않은 점, ③ 원고가 사용하는 홍삼액 상품포장용 박스(원고 이외의 업체는 위 박스를 사용하지 아니한다)을 클로즈업한 화면의 경우, 어느 정도 불투명 처리하였다고는 하나 그 처리 정도가 미흡하여, 화면상으로도 위 박스 중앙의 '蔘'이라는 글자 자체와 글자의 형태, 위치 등 그 독자적인 디자인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보도를 시청한 사람 중 적어도 이 사건 홍삼원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특히, 단골고객)이라면 위와 같은 장면을 보고 그것이 이 사건 홍삼원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 중 이 사건 홍삼원의 방영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 홍삼원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중국산 홍미삼을 원료로 홍삼액을 즉석 가공한 뒤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자를 단속한 사실을 주로 전달하면서, 이와 같은 부정유통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중국산 홍삼을 국산으로 허위 판매한 홍삼가공업체를 적발하였다'라는 내용의 취

제기자 멘트와 동시에 그 배경화면으로 이 사건 홍삼원의 내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단속직원이 원고가 사용하는 홍삼액 상품 포장용 박스를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이 방송된 점, ② 위 화면의 하단에 '중국산 홍미삼으로 만든 홍삼액 국산 둔갑'이라는 자막이 나간 점, ③ 이후 '영주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속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의 취재기자 멘트의 배경화면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단속직원이 이 사건 홍삼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사용된 점, ④ 마지막으로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가 지역 인삼 산업의 이미지와 신뢰를 훼손한다'는 내용의 취재기자 멘트 배경화면으로 불투명 처리되지 않은 이 사건 홍삼원의 내부장면이 방송된 점, ⑤ 이 사건 각 보도 자체에서 이 사건 홍삼원 장면은 이 사건 보도 내용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각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를 접하는 일반 시청자들, 특히 이 사건 홍삼원의 단골고객들이 보통의 주의로 이 사건 보도를 접한다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홍삼원이 중국산 홍미삼을 국산으로 속여 홍삼액으로 가공하여 팔아 오다 적발된 홍삼가공업체'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가 이 사건 홍삼원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홍미삼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가공·판매하고 있다고 암시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도를 방영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됨으로써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추후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홍삼원이 중국산 홍미삼을 국산으로 허위 가공, 판매한 업체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 및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추후보도를 통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위자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가 추후보도를 하였다는 사정은 아래에서 불위자료 참작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기로 한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홍삼원의 영업규모, 피고의 지위와 영향력, 이 사건 보도의 경위와 내용, 방송시간, 이 사건 각 보도 후 피고가 2007. 7. 11. 'KBS 안동방송 저녁 9시뉴스'에서 이 사건 홍삼원과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은 전혀 무관함이 밝혀져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그 액수는 2,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근욱
판사 이은정
판사 이지민

〈별지 1〉 방송내용 녹취록 생략 - 편집자 주 □

판결 2

원고를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지목하는 방송을 통해
원고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15.자 판결(2007가합23884)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신○○ 외 6인(이하 원고들)이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 신○○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피고 방송사가 지난 1997. 12. 20. 방영한 「추적, 사건과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원고 신○○이 살인 범죄를 일으킨 뒤 도주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피고 방송사가 신○○을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지목하여 공개 수배하는 왜곡된 내용의 방송을 함으로써 신○○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가족인 다른 원고들 까지 정신적 고통 받았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 신○○의 성명과 초상 및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그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범한 범죄자로

지목하는 방송을 하여 원고 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아버지인 원고 신□□, 계모인 원고 이○○, 형제자매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로 부터 범죄자의 가족으로 멸시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하여 “무죄 사유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그 동안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10년이 경과한 지금 다시 방송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명예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3년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2006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원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판 결 문

사 건 : 2007가합23884 손해배상(기)

원 고 : 1. 신 ○ ○
2. 신 □ □
3. 이 ○ ○
4. 신 △ △
5. 신 X X
6. 신 ▷ ▷

피 고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양천구 목동 920
대표이사 김 수 응, 하 금 열

변 론 종 결 : 2008. 4. 17.

판 결 선 고 : 2008. 5. 15.

주 문 : 1. 피고는 원고 신○○에게 5,000,000원, 원고 신□□, 이○○에게 각 2,000,000원, 원고 신△△, 신XX, 신▷▷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7. 12. 20.부터 2008.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 신○○에게 50,000,000원, 원고 신□□, 이○○에게 각 13,000,000원, 원고 신△△, 신XX, 신▷▷에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7. 12. 20.부터 2007.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저

녁뉴스(20:00)가 끝난 직후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상단화면에 '강도살인범 신○○에 대한 공개수배사건에 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글자는 통상 '추적, 사건과 사람들'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 '추적, 사건과 사람들'과 같은 글자 크기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적 사건과 사람들(85회)'이라는 방송을 통하여 공개수배된 자이다. 원고 신□□은 원고 신○○의 아버지이고, 원고 이○○은 원고 신○○의 계모(원고 신□□과 1971. 8. 28. 혼인하였다)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신○○의 형제자매들이다.

2)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이다.

나. 피고의 방송 보도의 경위와 내용

1) 피고는 각종 사건·사고를 취재하여 보도하는 '추적, 사건과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일컫는다)을 방송하고 있던 중,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용의자가 포착되었지만 검거되지 아니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용의자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하여 수배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게 되었다.

2) 이에 피고는 경찰청의 수사결과 및 설명에 따라 1997. 12. 20.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97긴급

수배' 라는 주제로 별지 제2목록 기재 방송내용과 같이 1996. 6. 13. 소외 망 유○○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사체를 유기한 사건의 용의자로 원고 신○○을 지목하며 공개 수배하는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 이라고 일컫는다)을 하였다.

다. 원고 신○○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등

1) 원고 신○○의 도주 및 귀국

원고 신○○은 위 유○○의 납치용의자로 지목되어 1996. 6. 18.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위 살인사건 당일 피해자 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다음날 원고 신○○을 데리고 국민은행 및 제일은행에서 위 원고가 예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녹화되었다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필름을 가지고 왔다. 그 후 원고 신○○은 같은 날 아침 무렵 경찰관과 같이 사우나를 하던 중 몰래 도망하였다. 원고 신○○은 같은 날 15:00경 후배인 조○○에게 자신 소유의 겔로퍼 승용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장안동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에서 위 승용차를 730만원에 매각한 다음 1996. 6. 21.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원고 신○○은 자신이 위 유○○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된 후에도 미국에 거주하면서 귀국하지 아니하다가 수사기관의 범죄인 인도신청에 따라 2003. 9. 4.경 강제추방 형식으로 귀국하였다.

2) 형사재판 결과

가) 원고 신○○은 2003. 9. 26. 위 유○○에 대한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원고 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고, 원고 신○○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모습과 그 다음날 새벽 무렵 가

방과 흰색 비닐에 포장된 물건 등을 철제 손수레(손수레에서 피해자의 혈액형과 같은 A형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를 이용하여 옮기는 모습이 녹화되었으며, 원고 신○○이 과거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청옥산 부근에 다녀 온 적이 있는 등의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 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고합 9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1. 23. 선고 2004노571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964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신○○의 성명과 초상 및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그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범한 범죄자로 지목(이 사건 방송에서는 원고 신○○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엘리베이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찍힌 원고 신○○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는 사체가 들어있던 그 가방을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한 남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까지 한 이 끔직한 사건' 이라고 표현하거나 원고 신○○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을 재구성하여 보여주고 있다)하는 이 사건 방송을 함으로써 원고 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 신○○의 아버지인 원고 신□□과 계모인 원고 이○○, 형제자매들인 나머지 원

고들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로 부터 범죄자의 가족으로 멸시를 받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은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속한 검거라는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원고 신○○을 단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찍힌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을 뿐이어서 방송 내용이 진실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의 설명 및 수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방송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우선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방송 내용은 원고 신○○을 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지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방송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 역시 원고 신○○이 위 살인사건을 실제로 범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방송과 같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의사실을 다소 극화하여 방송하면서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피의자를 공개수배하는 경우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방송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사가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방송된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방송이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방송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방송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로 지목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피고로서는 그 방송에 앞서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공개수배 방송을 할 만큼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등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경찰청의 설명 및 수사결과만을 믿고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이 진실하다거나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송의 내용, 방송사로서의 피고의 지위 및 영향력, 원고들의 나이 및 지위, 이 사건 보도 후의 정황 및 원고 신○○에 대한 무죄 판결의 이유, 원고 신○○이 위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다가 도망하여 1996. 6. 21. 일본으로 출국한 후 자신이 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음에도 2003. 9. 4.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신○○에 대하여 5,000,000원, 원고 신□□, 이○○에 대하여 각 2,000,000원, 원고 신△△, 신XX, 신▷▷에 대하여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신○○을 위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지목하여 공개수배하는 왜곡된 내용의 이 사건 방송을 함으로써 원고 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신○○에 대한 무죄 판결 이유의 요지는 ‘원고 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고, 원고 신○○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모습과 그 다음날 새벽 무렵 가방과 흰색 비닐에 포장된 물건 등을 철제 손수레(손수레에서 피해자의 혈액형과 같은 A형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를 이용하여 옮기는 모습이 녹화되었으며, 원고 신○○이 과거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청옥산 부근에 다녀 온 적이 있는 등의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일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원고 신○○은 위 살인사건 직후 피해자의 납치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말없이 경찰관의 지배를 벗어나 외국으로 도주하였고, 자신이 위 살인사건

의 피의자로 지목되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방송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다시 한 번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원고 신○○의 명예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명하는 것이 원고 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신○○에게 5,000,000원, 원고 신□□, 이○○에게 각 2,000,000원, 원고 신△△, 신XX, 신▷△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이 사건 방송일)인 1997. 12.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 이종문
판사 권기백

〈별지 1〉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 방송내용 녹취록 생략 - 편집자 주 □

판결 3

보도 취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게재한 내용만이 아니라
보도의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2008가합10694)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원고 농림수산식품부(이하 원고)가 피고 문화방송(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별지 1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2008. 4. 29. 「PD 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내보낸 내용에 대해 주저앉는 소는 광우병 의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 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으며, 방송은 특정위험물질은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수입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국제수역사무국이 정한 특정위험물질의 분류에 따르면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의 기사의 경우,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보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내용이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

다는 취지로 방송되었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8. 5. 6.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8서울조정123)을 하여 중재부는 별지 4의 결정문을 보도하라고 조정 결정하였으나 피고는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판결문

사 건 : 2008가합10694 정정, 반론

원 고 : 농림수산식품부

과천시 중앙동

대표자 장관 정 운 천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MBC경영센터

대표이사 엄 기 영

변 론 종 결 : 2008. 7. 25.

판 결 선 고 : 2008. 7. 31.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

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3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다툼 없음)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농산·수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로서 “PD 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방송 보도의 경위와 내용

1) 방송 일시와 해당 프로그램

피고는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60분 동안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일컫는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방송의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그 내용 중 원고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은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하였으나, 일부 도축장에서는 여전히 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주저앉은 소(일명 다운너 소, downer cow)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도축하였다.

②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2008. 4. 16. 사망하였는데 가족들과 주치의는 그 사망원인으로 인간광우병을 의심하고 있다.

③ 우리 정부는 2008. 4. 18. 미국 정부와 사이에,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이라고 일컫는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 결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이전에는 빼 없는 살코기의 수입만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7가지 특정위험물질(SRM) 중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위의 수입이 허용된다.

④ 이러한 협상 결과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미국 도축 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다.

⑤ 특정 유전자형(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약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약 2배 높은 수치이다.

⑥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

⑦ 우리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한다고 하나, 직접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아도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을 통하여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다. 이 사건 방송 후의 정황

1) 원고는 이 사건 방송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주도한 원고의 신뢰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5. 6.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언론중재위원회는 2008. 5. 15. '피고는 별지

4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문을 이 결정 확정 후 최초로 방송하는 MBC-TV "PD 수첩" 프로그램에 보도한다.'라는 요지의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08. 5. 26. 언론중재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2.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일반론

가. 관계 법률(발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

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요건

1)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일컫는다)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당해 언론보도의 내용이 진실과 다름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언론중재법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할 수도 있다.

2)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는데,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다. 언론사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언론사를 통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정정 또는 반론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제①주장(주거않은 소와 광우병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①주장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주저앉은 소가 도축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내보내면서, 위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의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미국 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나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은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라는 내레이션이 방송하고, 위 동영상을 제작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마이클 크래저가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 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 이어 2008. 4. 16.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한 사실, 이어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 마이클 헨슨이 “(미국산)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실험동물과 같다. 그저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뒤, 송○○ 프로듀서가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 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①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①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 소인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이미 도축 돼 식용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①보도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는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갑5, 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사실, 경기도에서 매년 600여 마리의 주저앉은 소가 발생하나 그 중 광우병 소는 발견된 적이 없는 사실, 미국에서 1997년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①보도 중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4)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5. 13.자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송○○ 프로듀서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왔습니다만, 일어서지 못하는 소, 이른바 다우너가, 일부 사람들은 전부 다 광우병에 걸린 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라고 묻자, 송○○ 프로듀서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다우너 소들을 여러 번 보시게 됐는데요, 이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꼭 광우병뿐만 아니라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은 광우병에 걸린 소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2008. 7. 15.자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송○○ 프로듀서가 “4월 29일 생방송 중에 저의 말실수 즉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소’라고 해야 할 것을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잘못 말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후속방송에서 정정을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정하며 아울러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후속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을12, 47). 그러나 이 부분 보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는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원인은 다양하므로 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에 나타난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임에 비하여, 위 후속보도의 주요 내용은 주저앉은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광우병도 분명히 그 원인이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 후속 보도만으로는 원고가 구하고 있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충분하게 보도가 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①보도 중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에 대하여 정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제②주장(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②주장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2008. 6. 12.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미국 WAVY TV가 2008. 4. 8.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뇌질환으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광우병입니다.”라고 방송한 부분을 인용한 사실,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사실은 내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MRI 검사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 아레사 빈슨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 바루이 “일반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은 MRI를 찍으면 뇌의 가운데에 있는 시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vCJD(인간 광우병)면 뇌의 양쪽 시상베게(pulvinar)가 상처를 입고 변형됩니다. 임상사진을 통해 상태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②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②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현재 미국 보건 당국이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②보도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갑8의 1, 9의 1,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미국 농무부는 2008. 5. 5. 미국질병통제센터(CDC)의 예비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중간발표를 하였고, 미국질병통제센터는 2008. 6. 12. 미국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NPDPSC)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최종 발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②보도 중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4)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5. 13.자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오동운 프로듀서가 “지난 5월 5일 미국 농무부 레이먼드 차관은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2008. 6. 17.자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송OO 프로듀서가 “지난 12일 CDC, 즉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인간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CDC에 의하면 이 의심사례가 국제적인 미디어의 관심을 끌었지만 미국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는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 때문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후속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을12, 13). 그리고 이 부분 보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2008. 6. 12.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의 위 2008. 5. 13.자 및 2008. 6. 17.자 방송을 통하여 충분한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②보도 중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의 후속보도로 인하여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 부분 보도에 대하여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제③주장(특정위험물질의 수입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③주장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정의에 의하면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의 경우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가 특정위험물질(SRM)에 해당하나,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모든 소

의 특정위험물질이 7가지라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예전과 달리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그대로 수입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바로 변형 프리온이다. 프리온이 특히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부위를 특정위험물질이라고 부른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다섯 가지는 들어오게 된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③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③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피고가 월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5가지가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갑16,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제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 의하여 국제수역사무국이 동물위생 및 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하는 국제기구로 인정된 사실,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가의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하여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나,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하여는 그 중 편도와 회장원위

부 2가지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미국이 2007. 5. 25.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4,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럽연합(EU)은 월령 12개월 이상의 소의 경우 두개골, 척수, 척주, 배근신경절, 장 전체, 편도, 장간막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지만, 월령 12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장 전체, 편도, 장간막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일본은 모든 소의 두부(혀, 불살 제외), 척수, 척주, 회장원위부, 배근신경절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우리 정부도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일의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나라 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이 사건 제③보도 중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은 국제수역사무국의 분류기준이 아닌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를 곧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정확한 사실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여야 할 언론사로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분류기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였는지를 밝혔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국제수역사무국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는 편도와 회장원위부 등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4)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였고, 피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보도에서 월령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라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이전인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가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더라도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에는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③보도 중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반론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원고의 제④주장(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④주장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예단할 수 없는 바, 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하여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한국인의 경우 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이므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보다 3배, 미국인보다 2배 높은 수치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한국인 500여 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④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④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갑11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는 사실,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④보도 중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4)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7. 15.자 “PD 수첩” 프로그램 끝 부분에서 송○○ 프로듀서가 “지난 4월 29일 PD 수첩은 한국인의 특정유전자형인 MM형이 영국인이나 미국인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에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전하고자 했던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M형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후속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을47). 그러나 이 부분 보도와 관련

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은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거나 그 확률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임에 비하여, 위 후속보도의 주요 내용은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르지 않는 아니하더라도 MM형 유전자의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높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단 1회, 그것도 프로그램 끝 부분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이루어진 위 후속 보도만으로는 원고가 구하고 있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충분하게 보도가 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④보도 중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정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원고의 제⑤주장(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⑤주장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우리 국민 건강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된다면 정부는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이○○ PD! 과연 대통령이 협상 내용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특히 문제가 생겨도 우리나라가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가지요?”라는 송○○ 프로듀서의 질문에, 이○○ 프로듀서가 “그전에는 등뼈 같은 광우병 위험 물질이 들어오면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두 차례나 등뼈가 나와서 검역중단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⑤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⑤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

이 사건 제⑤보도 중 원고가 문제 삼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종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와는 달리,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독자적으로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 즉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⑤보도 중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고의 제⑥주장(라면 스프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 위험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⑥주장

미국산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이 전부 제거된 상태에서 국내에 수입되므로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통하여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 그런데 피고는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을 섭취함으로써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이○○ PD! 쇠고기만 또 안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라는 송○○ 프로듀서의 질문에, 이○○ 프로듀서가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쇠고기뿐만 아니라 라면 스프, 알약캡슐, 심지어는 화장품 등에도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⑥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⑥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제⑥보도의 내용은 이 부분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는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라면 스프, 알약캡슐 등을 통하여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에 관하여 당사자가 다투는 쟁점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때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종전에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당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여 등뼈 같은 특정위험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던 점(갑1, 2, 을4)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여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위 보도 내용은 그 같은 가능성에 대한 피고의 평가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⑥보도 중 쟁점 부분인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부분은 피고의 평가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결국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역시 광우병에 걸린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사용한 라면 스프 등을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의 제⑦주장(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 태도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⑦주장

원고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앞두고서 2007년경 3차례에 걸쳐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현지 도축장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미국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등 우리 정부 측 협상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제대로 알았는지, 알려고 하였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미국 도축장에서 다우너 소가 억지로 일으켜 세워지는 장면, 아레사 빈슨의 사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의 인터뷰 내용, 미국에서 도축 되는 4천만 마리 내외의 소 중 광우병검사를 받는 소는 0.05%에 불과하고 미국 농무부 조사관의 소에 대한 검역은 형식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다음, "김○○ PD! 쪽 보면 말이지요, 그간 광우병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라는 송○○ 프로듀서의 질문에, 김○○ 프로듀서가 "사실 협상팀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⑦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⑦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

이 사건 제⑦보도의 내용은 이 부분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판

단으로는 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원고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미국 도축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임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써 원고의 협상준비나 능력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⑦보도는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제⑦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정 및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크기, 내용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된 시간대 및 그 비중, 그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위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위에서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내용)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송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언론사인 피고는 언론의 비판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인 판단이나 평가도 보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피고가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는 기회에 그

에 관한 반론이나 비판적인 견해 등을 방송한다면 정정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 경우 정정 및 반론보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5. 간접강제

원고의 지위, 피고가 이 사건 방송 후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하여 정정하는 취지의 후속보도를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위에서 본 작위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정정 및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간접강제청구는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 이종문
판사 권기백

〈별 지1〉 정정 및 반론보도문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08. 4. 29. 방송한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주저앉은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할 수 있어서, 위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본 프로그램에서, 특정 유전자형(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2배 높은 수치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본 프로그램에서,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 특정위험물질은 7가지인데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할 경우 미국 등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

어서는 편도, 회장원위부 등 2가지 부위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별 지2〉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 지3〉 반론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 지4〉 언론중재위원회결정문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본 방송이 지난 4월 29일 방영한 <PD 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제하의 보도 중 주저앉은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그 소들에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었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서는 5월 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발표가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인의 MM형 유전자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7년 6, 7월에 두 개 팀 8명이 미국 현지 도축장 등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